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6. 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박상수】

### 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개정(안 제1조)
  - 조례의 목적 구체화
-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개정(안 제4조)
  - [별표]를 삭제하고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[별표 2] 적용
-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
-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 수령액 및 5배의 금액 가산·징수
-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항 개정(안 제5조)
- 기타 관계 법령 개정·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다. 참고사항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」
- 입법예고: 2023. 4. 27. ~ 5. 1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 
(안 제1조)에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, (안 제4조)에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개정하는 내용으로 [별표]를 삭제 하고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[별표 2] 적용하는 내용이며,

개정 전		개정 후		
여비 규정	(단위 : 원)	(단위 : 원)		
	구분	숙 박 비 (1박당)	구분	숙 박 비 (1박당)
	제1호	실 비	제1호	실 비
제2호	실 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은 50,000)	제2호	실 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<u>100,000</u> , 광역시 <u>80,000</u> , 그 밖의 지역은 <u>70,000</u> )	

개정 전		개정 후
여비 조례	(단위 : 원)	
	구분	숙박비 (1야당)
	제1호	46,000 (구청장은 실비로 지급)
	제2호	30,000
		상 동

○ (안 제4조의2)에는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 신설하는 내용과, (안 제5조)에는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령액 및 5배의 금액 가산·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,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항 개정하고, 기타 관계 법령 개정·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을 하기 위해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31조(가산징수 등)1)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 18조의8(가산징수 등)2) 의 근거하여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(안 제4조의2)에는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 신설하는 내용과, (안 제5조)에는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 수령액 및 5배

1) 제31조(가산징수 등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21. 11. 30.>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>[본조신설 2013. 1. 9.]

2) 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21. 11. 30.>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3. 6. 11.]

의 금액 가산·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출장·초과근무 등 부정수급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고,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감찰 및 조사에 따라 그 부정 수령 및 환수 현황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등을 비추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입법취지에 부합된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이 필요할 것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·벌이 구분되도록 관계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